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 비판 - 탈세속화 시대에 다시 보는 종교의 사사화의 공공성

이용주 (송실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사사회가 아닌 공공성으로!?: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와 탈세속주의의 위험
- III. 세속국가 및 세속화의 법적 의미: 국가의 중립성과 종교의 자유
- IV. 세속국가 속 종교의 사사화의 공공성: 자유민주주의의 증진
- V. 나가는 말: 사사회인가, 공공성인가? 잘못된 양자택일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5.03>

• ABSTRACT •

Critical Reflexions on ‘Deprivatization-thesis’ of Public Theology:
Reestimating the Publicity of Privatization of Religion in a
Post-secular Age

Associate Prof., Lee, Yong Joo (Soongsil University)

Public theology calls for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sphere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academic world as it criticizes the reality of theology and church that they have long focused merely on private faith, individual ethics or religious issues within church communities. In this sense, criticism to and overcoming of the ‘privatization’ of theology can be clarified as alpha and omega of public theology. The main theme of public theology will, in this paper, be conceptualized as ‘deprivatization-thesis’(Entprivatizierungsthese) of public theology. Although motives and contributions of public theology might experience much empathies and affirmations, its criticism on the privatization of religion lacks of elaborated analysis about the juridical meaning of religious neutrality of secular state which was found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idea of liberal democracy during the period of modern secularization. This paper aims to expose the one-sidedness of deprivatization-thesis of public theology and to show the publicity of privatization of theology in contemporary context of post-secular age.

Key words: Public Theology, Deprivatization-thesis, Liberal Democracy, Secular State,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Privatization of Religion, Freedom of Religion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은 국내외 모두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신학담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공공신학은 교회와 신학이 개인의 내면적 신앙이나 사적인 윤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의 종교적인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러한 협소한 영역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학문 등 다양한 공적인 영역을 기독교적 고백에 기초하여 변혁시키는 책임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신학은 교회와 신학의 '사사회'(Privatisierung/privatization)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공공신학의 이와 같은 출발점과 목표를 본 연구에서는 '탈사사회 테제'(Entprivatisierungsthese/deprivatization-thesis)라고 개념화한다.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공공신학의 동기와 그 기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회에 대한 공공신학의 비판은 종교의 사사회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교회 현실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로부터 구성해 낸 개념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연구자는 판단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종교의 사사회에 대한 공공신학의 비판은 근대 세속화 과정에 대해 일치되지 않는 상이한 사회학적 해명들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형성된 세속국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실재와의 연관성 속에서 종교의 사사회가 지니는 실질적인 의미, 즉 법률적, 법철학적 의미에 대한 반성 위에 기초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기초한 세속국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종교의 사사회 현상의 법철학적, 역사적 의미 등을 검토함으로써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의 한

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를 통해서 공공신학의 향후 논의가 자유민주주의나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세속국가의 맥락에서 오히려 종교의 사사회를 지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자면, 본 연구는 공공신학이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주장을 넘어서 법학과 법철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와 더 긴밀히 연결될 때 더욱 그 동기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형태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사회가 아닌 공공성으로!?: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와 탈세속주의의 위험

공공신학은 21세기 들어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신학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신학’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¹⁾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조직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학과 실천신학 등 다양한 신학분과들과, 유럽과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가장 활발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신학 담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²⁾

그 명칭 자체가 시사하듯 공공신학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계몽주의와 근대의 세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지 신앙하는 개인의 사적인 구원과 개인윤리의 문제로 왜소화되어 버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1) 교회와 신학의 공적 책임이라는 주제는 사회윤리 영역에서 이미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공공신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마틴 마티(M. Marty)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Florian Höhne, *Öffentliche Theologie. Begriffsgeschichte und Grundfragen*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5), 15f.

2) 공공신학의 다양한 주제와 각 대륙별로 나타나는 논의에 대한 개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책이 도움이 된다: Sebastian Kim & Katie Day (eds.),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Leiden/Boston: Brill, 2017).

공적인 삶의 영역을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하여 변화시키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사사회”(Privatisierung)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비판적 평가는 공공신학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이미 1970년대에 미국에서 트레이시는 신학적 담론은 신학자 개인의 자기반성이 아니고 교회, 학교, 사회와 같은 공적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공적 담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³⁾

한편 독일에서 공공신학적 관심은 메츠와 몰트만 등에 의해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신학’을 제안하는 맥락에서 1960년대 말경 제기되었는데, 이때에도 역시 사사회에 대한 비판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다. 몰트만은 히틀러의 통치시기에 교회가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의 사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에만 천착하는 “내적인 망명” 즉 “사사회”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종교는 사적인 일이고 정치와는 무관하다”⁴⁾는 일반적인 신념을 넘어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비판적이며 책임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와 신학의 사화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탈사사회(Entprivatisierung)는 정치신학의 일차적인 신학 비판적 사명이다.”⁵⁾

트레이시나 메츠 등과 같은 공공신학의 선구자들뿐만 아니라 스택하우스, 볼프 혹은 하우어워스 등과 같이 교회와 신학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공공신학자들에게 사사회에 대한 비판은 계승된다. 스택하우스 역시도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신학은 오히려 정치, 경제, 학문 및 이를 포괄하여 삶의 궁극적 의미를

3) David Tracy, *The Ana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Theology and the Culture of Pluralism*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87), 3ff.

4) 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rnen Welt*, 광미숙 역,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서울: 동연, 2009), 70f.

5) Johann B. Metz, *Zur Theologie der Welt* (Mainz: Matthias-Grünewald, 1968), 101.

설명하는 종교적 공중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공적 에토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공적 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종교적 신념이 끼어들 여지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들 분야들에서 대부분의 토론은 “신학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양자” 모두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⁶⁾ 바로 이런 점에서 신학은 공적 토론의 토대이자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공공신학은 그 명칭 자체가 함축하는 것처럼 소위 교회와 신학이 개인의 내적 양심과 도덕의 문제로 왜소화되어 왔던 ‘사사회’를 거부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공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공공신학은 대체로 교회와 신학의 사사회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사사회를 넘어설 때에야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publicity/Öffentlichkeit)이 담보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공공신학의 출발점과 지향점을 가리켜 본고에서는 간략히 메츠의 주장을 수용하는 가운데 ‘탈사사회 테제’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교회와 신학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의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의 탈사사회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⁷⁾ 그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공공신학자들이 ‘사사

6)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성남: 북코리아, 2013), 163ff.

7) 이는 공공신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공적 영역’(the public/public sphere)이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트레이시가 공적 영역을 교회, 사회, 학교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스택하우스는 정치, 경제, 학문, 종교로 공적 영역을 분류하고 있다. 위의 책, 175ff. 공공신학자들 사이에 공적 영역의 분류와 관련하여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이들이 처음부터 교회와 신학의 ‘사사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종교

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몰트만은 사사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 상이한 내용을 가리킨다. 하나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형성 이후 신학이 개인의 '내면적 문제'에만 천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세속국가에서 제도화된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그것이다. 몰트만은 전자와 후자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관철될 때에만 종교의 자유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긍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정치에 대한 책임적 실천에 소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국가와 종교의 분리 때문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인해 “종교와 양심은 교회의 영역으로 제한당하게 되었고, 다른 삶의 영역들은 양심 없는 힘의 정치에 내맡겨져” 버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신학은 “단지 개인적이고 교회 내적인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데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공적인 증언과 정치적 자유”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⁸⁾

몰트만의 제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세속국가' 자체를 비판한다. 세속국가는 공공선을 지향해야 할 국가운영이 특정한 종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인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다는 요구에 기초해 있다. 이에 반해 볼프는 “신앙인은 각자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공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⁹⁾ 최근 들어 볼프는

의 사사화의 법률적, 법철학적 의미를 그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종교의 사사회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다 선명히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를 비판하고자 한다.

8) 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rnen Welt*, 광미숙 역,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71.

9)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운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적 공간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¹⁰⁾하며, 종교를 배제하려는 세속국가의 시도는 종교인에게는 종교에 대한 또 다른 억압으로 경험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사회’ 대신에 교회와 신학의 ‘탈사사회’를 주창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공공신학자들은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 이후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와 종교, 정치와 교회의 분리를 비판하는 경향을 띤다. 물론 이들이 엄격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¹¹⁾ 하지만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기초한 세속국가를 비판하고,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공적 영역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탈사사회는 공적 영역의 ‘탈세속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진단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공공신학의 이러한 입장은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사회 전반에 걸쳐서 -혹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탈세속주의’(postsecularism) 혹은 ‘탈세속화’ 현상의 큰 흐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시기적으로만 겹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오늘날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보장하는 세속국가를 비판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이처럼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발언권을 강화해 가는 현상은 한편으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탈세속화 현상은 유감스럽게도 다양

12f.

10) Miroslav Volf, *Flourishing: Why We Need Religion in a Globalized World*, 양혜원역, 『인간의 변영』 (서울: IVP, 2016), 170.

11) 이는 공공신학이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이나 로버트 벨라가 제시한 ‘시민종교’(civil religion) 모두에 비판적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슈미트는 국가의 주권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의 주권이 세속화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통치자의 주권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벨라는 시민들의 연대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위해 요구되는 종교적 형태들을 가리켜 시민종교라고 이름 붙였다. 이들에게는 신학적 진술이 국가/사회의 정당화나 유지를 위한 기능으로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면, 공공신학은 이와는 달리 기독교 신앙이 국가의 지배나 정치질서와 동일시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Florian Höhne, *Öffentliche Theologie*, 16ff.

한 종교들의 평화로운 공존이나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연대적인 공동체의 구성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근본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체제의 복귀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¹²⁾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는 -그 기본 동기에는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신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적 선언에 입각하여 단순히 수용·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이 비판하는 세속국가의 수립과 세속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교의 사사회에 대한

12) 그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다. 멀리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부터 중앙아시아의 탈레반 정부의 수립,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이슬람국가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정치체제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권 국가들에서는 배타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신념에 기초하여 네오-나치즘이 부활하고, 극우정당들이 제도 정치권 안에서 세력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극우정당인 AfD에서 개신교 목사가 활동한 사건으로 인해 독일 교회 안에서 논란이 가열된 바 있다: Klaus Prömpers, "Wie steht Trump zur Religion? Er versucht, das ganze Spektrum abzudecken," *domradio.de* 2017.1.19. <https://www.domradio.de/themen/weltkirche/2017-01-19/wie-steht-trump-zur-religion> (2019.2.4. 접속)

미국에서는 반이민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보수개신교 층으로부터 8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Gregory A. Smith & Jessica Martinez, "How the faithful voted: A preliminary 2016 analysis," *PewResearch Center* 2016/9/11,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11/09/how-the-faithful-voted-a-preliminary-2016-analysis/> (2019.2.4. 접속)

국내의 경우에도 소위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보수적인 정치집단의 다수 구성원들이 개신교 보수주의의 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실천의 모범으로 본회퍼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는 소위 '공적 실천' 혹은 '공공성 회복'이라는 주장 자체가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다원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본회퍼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을 보라: 이용필, "전광훈 '본회퍼처럼 생명 걸고 문재인 책망할 것',"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33> (2019.9.24. 접속)

이 주제에 대한 엄밀한 학술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T. Meireis & R. Schieder (eds.), *Religion and Democracy. Studies in Public Theology* (Baden-Baden: Nomos, 2017).

엄밀한 반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탈사사회가 단지 국가와 사회의 탈세속화와 일방적으로 동일시될 경우 탈사사회 테제는 근본주의적 종교신념과 전근대적인 윤리관으로의 회귀를 강화하고 현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III. 세속국가 및 세속화의 법적 의의: 국가의 중립성과 종교의 자유

앞에서도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신념에 기초해서 형성된 세속국가에 대한 비판과 결합되어 있다. 상당수의 공공신학자들은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교회와 신학으로 하여금 공공영역에서 퇴각하여 개인의 내면적 신앙이나 도덕, 교회 내의 신앙 훈련 같은 종교적인 영역에 왜소화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세속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공적 영역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배제하고,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이 영역들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볼프는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하여 계몽주의 이후 서구문화는 전반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세속화를 지향했다고 비판한다: “계몽주의 이후의 서구

13)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우어워스를 들 수 있다. 하우어워스가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신학자는 아니지만, 성서의 핵심 내러티브에 기초해서 사회윤리를 형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공신학과 유사한 관심사에 입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우어워스의 사회윤리 혹은 ‘교회윤리’는 근대 이후 사회철학과 사회제도 전반을 지나치게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성되는 개인의 덕의 윤리 개발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될 수 있다. 그는 교회와 세상, 예수 내러티브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완벽히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기꺼이 자유주의를 기독교의 이야기에 적합한 사회전략인 것처럼 수용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의 유명한 “교회됨의 윤리를 위한 테제” 제9항에 선명히 드러난다: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28ff.

문화에 속한 지식인들과 함께 그들은 신앙을 사회적인 삶의 요소로부터 제거하고 가능하면 근절하고자 했다.”¹⁴⁾ 비슷한 맥락에서 제임스 스미스 도 “복음이 제시하는 좋은 삶의 전망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형성하는 일군의 실천”¹⁵⁾이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물론 공공신학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해 근원적인 적대감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교회와 신학이 자유민주주의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의 사사화의 다른 한 축인 국가의 세속화라는 조건을 단지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되며,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교회와 신학이 공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주장은 근대초기에 기대되었던 것처럼 학문의 발달 및 세속화로 인해 종교가 곧 힘을 상실하게 되리라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가히 “종교의 귀환”¹⁶⁾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탈세속화 현황을 통해 지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의 세속화와 종교의 사사화에 대한 신학자들의 비판적 논지는 대체로 사회학적 담론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세속화란 “-정치, 법, 경제, 학문, 교육, 예술 등과 같은 사회 영역 혹은 사회 체계들의 점증하는 혹은 이미 완성된 세분화와 분리의 과정”이라고 정의되는데, 특히 근대 이후 개별적으로 발전한 이 영역들이 “종교적 기구 및 규범으로부터 해방”¹⁷⁾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호세 카사노바는 세속

14)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45.

15) James K.A. Smith, *Awaiting the King: Reforming Public Theology*, 박세혁 역,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공공신학의 재형성』 (서울: IVP, 2017), 90.

16) Martin Riesebrodt, *Rückkehr der Religionen. Fundamentalisms und der 'Kampf der Kulturen'* (München: C.H. Beck, 2000), 48ff.

17) Thomas Gutmann, “Säkularisierung und Normenbegründung,” Nils Jansen & Peter

화와 관련한 사회학적 관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는 “분화이론”(differentiation thesis)으로 국가, 경제, 학문 등과 같은 세속영역이 세분화되고, 이 영역들이 종교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사사화이론”(privatization thesis)으로 종교가 공적 공간으로부터 사적 공간으로 퇴각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셋째는 “종교의 몰락 이론”(decline-of-religion thesis)으로 세속화 과정을 통해 마침내 종교가 사라지게 되리라는 입장을 가리킨다.¹⁸⁾ 물론 카사노바가 분류한 세속화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은 서로 엄격하게 구별된다기보다는 중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볼프와 스미스의 세속화 과정에 대한 비판은 이 요소들 모두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반면, 뷔르츠부르크 대학의 법철학 교수인 드라이어(Horst Dreier)는 세속국가라는 맥락 안에서 세속화가 지니는 법률적인 의미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드라이어에 의하면 법률적인 -즉 국가 내의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의미에서 세속화란 단지 “국가와 교회의 원칙적인 분리”(prinzipielle Trennung von Staat und Kirche)를 가리킨다. 세속화 즉 국가와 교회의 원칙적인 분리는 국가와 교회 양측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의 측면에서 보자면 세속화는 “특수한 신앙의 권위로부터 법률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종교와 세계관의 자유가 구현되는 과정”을 지시한다.¹⁹⁾ 이를 통해 국가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세계관적으로

Oestmann (eds.), *Gewohnheit, Gebot, Gesetz: Normativität in Geschichte und Gegenwart; Eine Einführung*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21-248, 225.

18) José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r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9ff.

19) 이때 드라이어는 비켄뢰데의 정의를 수용하면서 사용한다: E.-W. Böckenförde, *Der säkularisierte Staat: Sein Charakter, seine Rechtfertigung und seine Probleme im 21. Jahrhundert* (Siemensstiftung, 2007), 11f; H. Dreier, *Säkularisierung und Sakralität*, (Tübingen: Mohr Siebeck, 2013), 15에서 재인용.

중립적인 국가 즉 '세속국가'가 되며, 세속국가 안에서 개별 시민은 국가의 개입 없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세속국가는 “시민들을 위한 신앙 및 세계관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세계관적으로 중립적인 국가”를 뜻한다.

드라이어에 의하면, 국가의 세속화 혹은 세속국가의 형성은 법률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사회학적인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것처럼- 종교의 사적 영역으로의 제한이나,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 혹은 “종교의 쇠퇴나 제거를 전혀 의도하지 않는다”. 세속국가는 단지 법질서 형성과 국가 운영에 있어서 종교적, 세계관적 신념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자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종교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공무와 관련한 정당화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지배나 간섭으로부터 종교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국가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religiös-weltanschauliche Neutralität des Staates)이 관철될 때에만,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시민들이 자신의 종교와 세계관에 따라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세계관적 중립성”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²⁰⁾

법률적, 법철학적 측면에서 세속화란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기초하여 국가는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을 고수하고, 이 전제 위에서 법률을 통

뵐켄퍼르데는 법학자이자 법철학자로서 독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적 세속국가의 형성과 세속화의 관계에 관한 권위자이다. 특히 “자유주의적이고 세속화된 국가는 자기 스스로는 보증할 수 없는 전제들에 기초한다”는 뵐켄퍼르데 명제(Böckenförde-Diktum)는 법학과 종교학, 신학 등에서 세속화 문제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토론을 촉발시켰다: E.-W. Böckenförde, “Die Entstehung des Staates als Vorgang der Säkularisation,” *Recht, Staat, Freiheit. Studien zur Rechtsphilosophie, Staatstheorie und Verfassungsgeschichte* (Frankfurt a./M.: Suhrkamp, 2006), 92-114, 112.

20) Horst Dreier, *Säkularisierung und Sakralität*, 15f.

해 종교의 자유를 보증하는 세속국가의 형성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세속국가가 종교의 사사화 즉 -공공신학자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의 축소나 약화, 혹은 제거를 지향한다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라이어에 의하면 국가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이란 다음을 뜻한다: 첫째, 국가기관과 교회기관의 혼합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거부된다. 국가는 종교적, 세계관적 문제를 규제하지도 않으며, 신앙하는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신념이나 행동, 묘사 등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둘째, 종교와 세계관은 시민들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신앙과 관련된 일들에 개입하지 않는다. 시민의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 국가는 그 어떤 가치판단도 하지 않는다. 셋째,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시민은 공무에 종사함에 있어 제약과 차별을 받지 않는다. 넷째, 국가는 어느 특정한 형이상학적 진리나 초월적인 종교적 내용에 자기 자신을 근거 지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언제나 ‘세속국가’로 머무른다.²¹⁾ 국가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에 대한 네 가지 해명 중 마지막 요소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국가는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적 신념에 자기 자신을 기초지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재진술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앞의 세 가지 해명들은 전반적으로 국가가 시민 개인의 종교나 세계관의 유무와 그 종류에 따라 시민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또한 공적, 사적 삶에 있어 이익이나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세속국가의 기본 원리, 즉 국가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은 어디까지나 국가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

21) Horst Dreier, *Staat ohne Gott. Religion in der säkularen Moderne* (München: C.H. Beck, 2018), 98ff.

성에 기초한 세속국가와 세속화는 결코 종교의 약화나 제한, 혹은 제거를 지향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한다.²²⁾

세속화와 세속국가의 형성이 종교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법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에 기초한 근대 세속국가가 수립되던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도 정당화된다. 독일의 경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광범위한 종교의 자유는 1848년에 공포된 독일제국헌법(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 헌법은 1848~1849년에 진행되었던 독일혁명과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통해 공포된 것으로서, “완전한 신앙과 양심의 자유”, “사적,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보편적인 종교생활의 실시에 대한 무제한적인 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의 사전 인준 없는 종교공동체의 자유로운 설립”이 보장되었고, 종교의 종류나 유무와 관계없이 “시민의 권리와 시민법적 권리는 제약되지도 제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헌법조항을 통해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다.²³⁾ 이 헌법안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22) 하버마스 역시도 국가의 지배에 있어서 세계관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전제라고 평가한다. Jürgen Habermas, “Religion in der Öffentlichkeit. Kognitive Voraussetzungen für den öffentlichen Vernunftgebrauch religiöser und säkularer Bürger,” *Zwischen Naturalismus und Relig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5), 119-154, 134.

23) H. Dreier, *Säkularisierung und Sakralität* (2013), 20: “모든 독일인은 완전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144조); “모든 독일인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 계약을 받지 않는다.”(145조); “시민과 국가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은 종교적 고백으로 인해 제약되지도, 제한되지도 않는다.”(146조); “모든 종교단체는 그 규칙들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집행한다.”(147조); 독일제국헌법은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통해 공포된 독일 최초의 자유주의적 헌법으로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Frankfurter Reichsverfassung)이라고도 불리우고, 프랑크푸르트의 바울교회에서 공포되었기에 ‘바울교회 헌법’(Paulskirchenverfassung)이라고도 불리운다. 각주에서 인용된 조문은 다음 자료에 의존한다. *Die Frankfurter Reichsverfassung*: <http://www.dircost.unito>.

것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렇게 명시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즉 세속화는 시민들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독일제국헌법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에 관한 규정들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Weimarer Rechtsverfassung)에서도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고 오늘날 독일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를 “불가침”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적,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unverletzlich)하다.”²⁴⁾

상기한 것처럼 세속화란 국가가 법률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세속국가의 시민들은 “종교적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법적으로 보증”받는다. 종교적이건, 비종교적이건 혹은 반종교적이건 간에 관계없이 각 사람은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종교생활이 “보편적인 국가법률에 대한 순응이라는 조건”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한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호된다.²⁵⁾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세속국가나 세속화는 종교적 영향력의 약화나 축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반대로 세속화는 국가가 “종교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종교적 자기결정을 보호”²⁶⁾할 것을 촉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속화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종교공동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 자신의 관심을 증진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세속화는 “종교의 기능상실이 아니라

it/cs/pdf/18490328_germanialmpetroTedesco_ted.pdf (2019.10.4. 접속)

24)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4 Abs. 1: <http://www.gesetze-im-internet.de/gg/GG.pdf> (2019.10.4. 접속)

25) G. Anschütz, “Die Religionsfreiheit,” G. Anschütz & R. Thoma (eds.), *Handbuch des Deutschen Staatsrechts*, Bd. 2 (1932), 681; Horst Dreier, *Säkularisierung und Sakralität*, 22f.에서 재인용.

26) Martin Heckel, “Zur Zukunftsfähigkeit der deutschen ‘Staatskirchenrechts’ oder ‘Religionsverfassungsrechts?’,”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ol. 134, No. 3(2009): 309-390, 367.

종교의 자립화”²⁷⁾를 의미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⁸⁾

IV. 세속국가 속 종교의 사사화의 공공성: 자유민주주의의 증진

공공신학은 세속국가의 형성 및 세속화가 공적 영역으로부터 종교를 배제하는 종교의 사사화를 초래하고, 이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면 신앙을 사람들의 내면에 가두어 두고 신앙의 영향력을 종교적인 공동체의 경계 안으로 제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역으로 “대규모의 종교적 억압”²⁹⁾에 지나지 않는다는 볼프의 비판은 사사화에 대한 공공신학자들의 광범위한 우려를 대변한다. 월터스토프 역시도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할 때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을 배제하는 종교의 사사화를 초래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고 비판한다. 신앙인들에게 종교는 삶의 총체성을 규정하기에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실존은 종교적 관점에 입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 수립이나 법률입안 같은 공적인 문제에서 종교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³⁰⁾

하지만 공공신학 측으로부터 제기되는 이러한 비판이 과연 세속국가의

27) Alois Hahn, “Herrschaft und Religion,” in: J. Fischer & H. Joas (eds.), *Kunst, Macht und Institution. Studien zur philosophischen Anthropologie, soziologischen Theorie und Kulturosoziologie der Moderne. Festschrift für Karl-Siegbert Rehberg* (Frankfurt a./M.: 2003), 331-346, 345.

28) Horst Dreier, *Statt ohne Gott*, 13f.

29)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198.

30) Nicholas Wolterstorff, “The Role of Religion in Decision and Discussion of Political Issues,” Robert Audi & Nicholas Wolterstorff, *Religion in the Public Square*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7), 67-120, 특히 72f.; 104f.

수립과 더불어 종교의 사사화가 진행되던 당시 생성된 관련 법규들의 의도와 그 역사적 의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비판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속화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 혹은 국가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가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하여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세속국가의 수립과 운영에는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이런 점에서 국가는 신을 가지지 않는다(Staat ohne Gott). 하지만 이는 결코 다수의 공공신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국가가 종교를 약화시키거나 배제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와 신앙 사이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진리판단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적 신념들의 진리판단과 이에 따른 삶의 형성의 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속화된 근대 헌법국가는 ‘종교’라는 자료에 기초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삼가며, 오직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³¹⁾

세속국가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오직 법률에만 기초해서 통치한다. 이로써 정치는 종교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국가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 즉 종교적 중립성에 기초하여 시민에게 다만 법률을 준수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내적 규범이나 요구도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의 과제는 절대적인 진리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으며, 다만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질서 가운데에서 공존하면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다. “절대적인 타당성을 주장하는 종교적 진리에 관한 질문”은 배제되며, 국가의 지배는 “오직 현세적인 방식으로 근거”지워진다. 그러

31) Herbert Schnädelbach, *Religion in der modernen Welt* (Frankfurt a/M.: Fischer, 2009), 100.

므로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률을 형성한다”(auctoritas non veritas facit legem)는 것은 근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핵심 모토이다. 국가는 “개인의 양심”과 같은 “내적인” 영역에 개입해 들어가지 않으며, 단지 법률이 준수되고 다양한 개인들의 자유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질서가 유지되는지의 문제와 같은 “외적인” 영역에만 개입한다.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내적인 결정은 국가의 몫이 아니고, 철저하게 시민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 된다. 종교의 ‘사사회’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세속적인 법치국가에서 진리문제에 대한 결정은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으로 보호받으며,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적인 법치국가에서 진리는 사사회”될 수밖에 없다. ‘종교의 사사회’는 결코 세속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교에 대한 제약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 세속국가 내에서 각 ‘개인’에게 보장된 “보편적인 자유성의 표현”이다.³²⁾

사사회가 종교를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제거한다는 공공신학의 우려 역시도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1891년에 작성된 독일 사민당의 에어푸르트 강령은 종교의 사사회를 명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민당은 종교를 “사적인 일(Privatsache)”로 간주하며, “공적인 수단을 가지고 교회와 종교적인 목표들을 위해 사용하는 일의 철폐”를 추구한다.³³⁾ 하지만 이때 요구되는 종교의 사사회는 결코 종교가 ‘가정 내의’ 일이라거나, 혹은 ‘공공연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드라이어에 의하면, 종교가 ‘사적인 일’이라는 정치적 선언은 국가를 더 이상 ‘기독교적’인 신념에 입각하여 운영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다만 ‘개인적’(individuell)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32) K.F. Gärditz, “Säkularisierung und Verfassung,” O. Depenheuer & C. Grabenwarter (eds.), *Verfassungstheorie* (Tübingen: Mohr Siebeck, 2010), 153-198, 특히 157-165.

33) Bundessekretariat der Jungsozialisten, *Programm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Hannover: J.H.W. Dietz, 1963), 78.

국가가 교회 즉 특수한 종교신념과의 일치 속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의 공적 자원들을 가지고 교회를 지원하는 국가교회제도를 거부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종교의 사사화란 국가교회제도를 철폐하고 국가 내 모든 '개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종교는 철저히 내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교가 사적인 일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의 수행을 가정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만 제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1849년에 공포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은 국가교회 제도의 철폐를 지향함으로써 종교의 사사화를 주장하는데, 역시 이때에도 모든 독일인은 “자신의 종교를 공동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공적으로(연구자의 강조) 실행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³⁴⁾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가 ‘사적인 일’이라는 말은 신앙을 가지거나 반대하는 일 모두 철저히 개인의 결정의 문제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더 확장하자면 “모든 종교공동체는 자기 스스로를 형성”할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종교공동체는 자신의 “신앙고백에 대한 국가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³⁵⁾는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행위들은 국가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것이 종교의 사사화가 지니는 의미이다.

1919년에 공포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역시도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킴으로써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교의 사사화를 명문화하는데, 이는 교회를 공적인 권리를 지닌 기관으로 인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제거되었을 뿐, 교단의 신앙에 따라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여전히 보장되었다. 역시 이때에도 국가의 종교적 중립과 종교의

34) *Die Frankfurter Reichsverfassung*, Art. V, § 145. http://www.dircost.unito.it/cs/pdf/18490328_germaniaImperoTedesco_ted.pdf (2019.10.4. 접속)

35) 위의 글, § 147.

사사회는 결코 교회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신앙의 자유가 더욱 강화된다.³⁶⁾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종교의 사사회는 국가의 세속화와 더불어 국가가 다양한 종교를 지닌 개인들과 종교 공동체들이 사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이에 따른 종교의 사사회 즉 개인화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지 종교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법률에 따라 통치되는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에 입각한 세속국가 내에서는 다양한 종교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 이처럼 종교의 사사회를 통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이어는 종교의 사사회를 가리켜 “자유주의적인 자유이해의 총괄개념”³⁷⁾이라고까지 평가한다.

종교의 사사회는 단지 개인과 종교단체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종교의 사사회는 — 그와 결합되어 있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원칙과 더불어 — 국가로부터 신적 권위와 정당성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힘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국가에 대한 종교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더욱 강화하고, 종교가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종교의 사사회는 종교활동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력과 국가의 지배의 축소’를 초래한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교의 사사회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종교와 정치권력의 결합을 끊어 내고 정치적 지배의 “탈신성화”(entsakralisiert)를 구현하기 때문이다.³⁸⁾ 드라이어에

36) Jan Rohls, “Die Zähmung der Macht,” A. Grötzing et al. (eds.), *Protestantische Kirche und moderne Gesellschaft* (Zürich: TVZ, 2003), 47-70, 66.

37) Hortst Dreier, *Säkularisierung und Sakralität*, 36.

38) 위의 책, 40f.

의하면 종교의 사사회와 더불어 국가는 신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고, 오직 국민의 의지를 대변함으로써만 담보하게 된다.³⁹⁾ 이런 점에서 보자면 종교의 사사회는 국가의 지배와 개입 없이 개별 시민이 자신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며, 자유민주주의의 보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결코 제거될 수 없는 요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속국가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교의 사사회는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다양한 개인과 종교공동체들이 사적 및 공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종교의 사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한 사회 안에는 상이한 종교와 세계관들이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와 세계관들 사이의 공존과 입장의 차이는 -그것이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국가 내의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상이한 종교들의 공존은 갈등과 위기를 내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와 종교 양측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이를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의 행위를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간략히 정리한다:

첫째,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은 결코 국가가 그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치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 세속국가는 그 자체로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근본 가치들 위에 토대해 있다⁴⁰⁾: 세속국가는 “종교적 경험들이나 신앙의

39) 미국 헌법의 전문에 등장하는 첫 세 단어 “we the people”은 바로 이처럼 국가가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의지에 기초하여 법률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usconstitution.net/const.pdf> (2019.10.4. 접속)

40) 이와 관련하여 헤름스는 법질서의 형성과 같은 국가의 행위의 토대에는 종교적, 세계관적 신념들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모든 종류의 종교적, 세계관적

확신들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가치들에 기초⁴¹⁾해 있다. 따라서 세속국가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은 기계적인 중립성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각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보호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시민들과 종교공동체의 자유를 그들의 보편적인 시민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둘째, 종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법률을 통해 보장되는 종교의 자율성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보호되는 가치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으로 인해 한 국가 내에 상이한 종교와 세계관들이 공존한다는 현실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요구이다. 상이한 종교들이 공존하면서 각자의 자유를 인정받는 일은 단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각 종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가치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진리주장이 국가 내의 다른 시민들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시도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관 및 종교적 확신에 관한 질문들과 관련한 지속적인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치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 동료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해야만

신념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권, 민주주의, 삼권분립 등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들 역시도 계몽주의 이후의 특수한 사회철학에 빚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세속국가는 특정한 종교적 이념에 기초하거나 이를 지향하지 않으며, 보다 세속적인 언어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득 가능한 가치들 위에 토대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논의들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Eilert Herms, *Politik und Recht im Pluralismus* (Tübingen: Mohr Siebeck, 2008), 170ff.; Hasso Hofmann, *Verfassungsrechtliche Perspektiven: Aufsätze aus den Jahren 1980-1994* (Tübingen: Mohr Siebeck, 1995), 51ff.

41) Horst Dreier, *Staat ohne Gott*, 106.

한다; 이러한 국가 시민적 연대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들은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동기 지어진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⁴²⁾

하버마스의 진술을 따라서 보자면, 개별 종교는 각자의 진리주장에 기초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삶의 형성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시민들 간의 연대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합리적 설득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언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제한’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초한 세속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양한 종교와 세계관의 존속이 침해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실천과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상기한 관점에서 보자면 공공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종교의 사사회는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의 공적 실천에 있어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원리이다. 세속국가 내에서 종교는 근본적으로 ‘사적인 성격’(Privatheit)을 띠 수밖에 없다. 이는 위에서 충분히 검토했듯이 종교가 근본적으로 개인들의 침해받을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세속성, 종교의 사적 특징이 존중되는 가운데에서만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사적, 공적 삶의 실현이 가능하다. 국가의 세속화와 종교적 중립, 그리고 종교의 사사회는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안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를 고려한다면 국가의 세속화에 대한 공공신학의 비판은 공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유는 오직 “국가 질서가 하나의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특징을 지니고, 의견과 단체의

42) Jürgen Habermas, “Religion in der Öffentlichkeit”, 126.

복수성을 허용할 때에만 현실화되고 보장될 수"⁴³⁾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공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세속국가와 세속화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성급한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반대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됨으로써 자유, 평등, 연대 같은 가치들이 보편적으로 시민들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화되도록 돕는 데에서 교회의 공적 과제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괴팅엔 대학의 공공신학자인 폴케는 신학은 중립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립성의 정치운리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말한다. 교회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세속성, 종교의 근본적인 사적 특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폴케는 “사회의 복리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교회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이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신중한 “자기제한”(Selbstbeschränkung)을 감행할 것을 제안한다.⁴⁴⁾ 국가의 세속화와 종교의 사사회를 단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와 틀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기제한’을 시도함으로써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사사회인가, 공공성인가? 잘못된 양자택일

공공신학은 교회와 신학이 지나치게 내면적인 신앙과 개인윤리의 문제로만 침잠하고 왜소화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공적

43) Wolfgang Huber, “Dialog der Religionen in einer pluralen Gesellschaft-Überlegungen aus evangelischer Perspektive. Rede anlässlich der Verleihung der Ehrenmedaille des EAK zum Gedenken an Hermann Ehlers” VI.: https://www.ekd.de/070616_huber_eak.htm (2019.9.10. 접속)

44) Chr. Polke, *Öffentliche Religion in der Demokratie: Eine Untersuchung zur weltanschaulichen Neutralität des Staate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9), 27.

영역에서 공공선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공신학의 출발점이자 목표로서 공유되는 탈사사화 테제는 종교의 사사화라는 역사적 현상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세속국가 형성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진단, 그리고 종교의 사사화가 국가권력을 탈신성화하고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탈세속주의 시대에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탈사사화는 자칫하면 정치와 국가 영역에 대한 종교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고, 이로써 종교들 간의 충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탈사사화 테제를 반복한다고 해서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 사사화가 국가와 종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보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교회와 신학의 사사화는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사사화는 그 자체로 국가와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사화와 공공성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상보적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공공신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탈사사화 테제를 반복하기보다는 교회와 신학이 종교의 사사화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떻게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 연대적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등의 문제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이용필. “전광훈 ‘본회퍼처럼 생명 걸고 문재인 책망할 것’.”: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33> (2019.9.24.
접속).

• 번역서

Hauerwas, Stanley/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Moltmann, Jürgen/곽미숙 역.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서울: 동연, 2009.

Stackhouse, M. L./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성남: 북코리아, 2013.

Smith, K.A. James/박세혁 역.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공공신학의 재형성』.
서울: IVP, 2017.

Volf, Miroslav/양혜원 역. 『인간의 번영』. 서울: IVP, 2016.

_____/김명운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 양서

Anselm, R. “Lutherische Leitkultur: Kirche und Gesellschaft in der Sicht des konservativen Kultur luthertums im Kaiserreich.” Grözinger, A. et al., eds., *Protestantische Kirche und moderne Gesellschaft*. Zürich: TVZ, 2003, 169-189.

Böckenförde, E.-W. “Die Entstehung des Staates als Vorgang der Säkularisation.” *Recht, Staat, Freiheit. Studien zur Rechtsphilosophie, Staatstheorie und Verfassungsgeschichte*. Frankfurt a./M.: Suhrkamp, 2006, 92-114.

Bundessekretariat der Jungsozialisten, *Programm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Hannover: J.H.W. Dietz, 1963.

Casanova, José. *Public Religions in the Mor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Dreier, Horst. *Staat ohne Gott. Religion in der säkularen Moderne*. München: C.H. Beck, 2018.
- _____. *Säkularisierung und Sakralität*. Tübingen: Mohr Siebeck, 2013.
- Die Frankfurter Reichsverfassung*: http://www.dircost.unito.it/cs/pdf/18490328_germaniaImperoTedesco_ted.pdf (2019.10.4. 접속)
- Gärditz, K.F. "Säkularisierung und Verfassung." Depenheuer, O. & Grabenwarter, C., eds. *Verfassungstheorie*. Tübingen: Mohr Siebeck, 2010, 153-198.
- Grotefeld, Stefan. "Postsäkulare Gesellschaft und säkularer Staat: über öffentliche Vernunft aus protestantischer Sicht." Bormann, Franz-Josef & Irlenborn, Bernd. *Religiöse Überzeugungen und öffentliche Vernunft: zur Rolle des Christentums in der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Freiburg im Breisgau: Herder, 2008, 281-303. <https://www.zora.uzh.ch/id/eprint/3316/> (2019.10.15. 접속)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ttp://www.gesetze-im-internet.de/gg/GG.pdf> (2019.10.4. 접속)
- Gutmann, Thomas. "Säkularisierung und Normenbegründung." Jansen, Nils & Oestmann, Peter, ed. *Gewohnheit, Gebot, Gesetz: Normativität in Geschichte und Gegenwart; Eine Einführung*.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21-248.
- Habermas, Jürgen. "Religion in der Öffentlichkeit." *Zwischen Naturalismus und Religion. Philosophische Aufsätze*. Frankfurt a./M.: Suhrkamp, 2005, 119-154.
- Hahn, Alois. "Herrschaft und Religion." Fischer, J. & Joas, H. eds. *Kunst, Macht und Institution. Studien zur philosophischen Anthropologie, soziologischen Theorie und Kultursoziologie der Moderne. Festschrift für Karl-Siegbert Rehberg*. Frankfurt a./M.: 2003, 331-346.
- Heckel, Martin. "Zur Zukunftsfähigkeit der deutschen 'Staatskirchenrechts' oder 'Religionsverfassungsrechts?'"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ol. 134, No. 3(2009): 309-390.
- Hermes, Eilert. *Politik und Recht im Pluralismus*. Tübingen: Mohr Siebeck, 2008.

- Hofmann, Hasso. *Verfassungsrechtliche Perspektiven: Aufsätze aus den Jahren 1980-1994*. Tübingen: Mohr Siebeck, 1995.
- Höhne, Florian. *Öffentliche Theologie. Begriffsgeschichte und Grundfragen*.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5.
- Huber, Wolfgang. "Dialog der Religionen in einer pluralen Gesellschaft-Überlegungen aus evangelischer Perspektive. Rede anlässlich der Verleihung der Ehrenmedaille des EAK zum Gedenken an Hermann Ehlers.": https://www.ekd.de/070616_huber_eak.htm (2019.9.10. 접속)
- Kim, Sebastian & Day, Katie, eds.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Leiden/Boston: Brill, 2017.
- Koschorke, A. "Säkularisierung und Wiederkehr der Religion: Zu zwei Narrativen der europäischen Moderne." Willems, U. et al., ed. *Moderne und Religion. Kontroversen um Modernität und Säkularisierung*. Bielefeld: transcript, 2013, 237-260.
- Meireis, T. & Schieder, R., eds. *Religion and Democracy. Studies in Public Theology*. Baden-Baden: Nomos, 2017.
- Metz, J. Baptist. *Zur Theologie der Welt*. Mainz: Matthias-Grünewald, 1968.
- Polke, Chr. *Öffentliche Religion in der Demokratie: Eine Untersuchung zur weltanschaulichen Neutralität des Staate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9.
-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usconstitution.net/const.pdf> (2019.10.4. 접속)
- Prömpers, K. "Wie steht Trump zur Religion? 'Er versucht, das ganze Spektrum abzudecken'." *domradio.de* 2017.1.19.
<https://www.domradio.de/themen/weltkirche/2017-01-19/wie-steht-trump-zur-religion> (2019.2.4. 접속).
- Riesebrodt, Martin *Rückkehr der Religionen. Fundamentalisms und der 'Kampf der Kulturen'*. München: C.H. Beck, 2000.
- Rohls, Jan. "Die Zähmung der Macht." Grötzing, A. et al., eds. *Protestantische Kirche und moderne Gesellschaft*. Zürich: TVZ, 2003, 47-70.
- Schnädelbach, Herbert. *Religion in der modernen Welt*. Frankfurt a/M.:

Fischer, 2009.

Smith, Gregory A. & Martinez, J. "How the faithful voted: A preliminary 2016 analysis." *PewResearchCenter* 2016/9/11,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11/09/how-the-faithful-voted-a-preliminary-2016-analysis/> (2019.2.4. 접속).

Tracy, David. *The Ana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Theology and the Culture of Pluralism*.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87.

Wolterstorff, Nicholas. "Role of Religion in Decision and Discussion of Political Issues." Audi, R. & Wolterstorff, N. *Religion in the public square: The place of religious convictions in political debate*.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7, 67-120.

논문투고일: 2019년 10월 27일

심사게시일: 201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03일

• 국 문 초 록 •

공공신학은 교회와 신학이 개인의 내면적 신앙이나 사적인 윤리, 혹은 교회 공동체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들에만 집중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정치, 경제, 학문 등 다양한 공적인 영역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변혁시킬 것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신학의 '사사회'(Privatisierung/privatization)에 대한 비판과 극복은 공공신학의 출발점이자 최종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Entprivatisierungsthese/deprivatization-thesis)라고 개념화한다. 공공신학의 동기와 기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할 수 있지만 종교의 사사회에 대한 공공신학의 비판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더불어 근대 세속국가가 생성되던 당시의 상황과 의미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토대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사사회 현상을 세속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종교의 사사회 그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공신학의 탈사사회 테제의 일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속국가 형성과정을 규정했던 법률들과 그 법철학적 의의들에 주목한다. 이로써 탈세속화 시대에 공공신학의 주요 과제는 단순히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의 긴밀한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될 것이다.

주제어: 공공신학, 탈세속화테제, 자유민주주의, 세속국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종교의 사사회, 종교의 자유
